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65 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19 조에 의거하여 제 65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4 월 24 일(금) 오전 10 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1-8, IHQ 2 층 Studio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부득이 불참하시는 경우 위임장(별첨 3)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분할계획서 (분할재무제표 포함)

※ 별첨 2. 위임장

2026년 4월 9일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박종철 (직인생략)

[별첨]

# 분할계획서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2026년 3월 13일

# 분할계획서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이하에서 정의됨)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존속하고자 한다.

## 1. 분할의 목적

-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i show 채널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한다.
- (2)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 및 본건 분할 이후 다양한 후속 개편방안을 포함한 사업구조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 분할의 방법

- (1) 상법 제530 조의 2 내지 제530 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 신설회사도 비상장법인이 된다.

### 【회사 분할 내용】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비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	i show 채널	비상장법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

- (2) 분할기일은 2026년 5월 3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3) 분할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 530 조의 9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다만, 분할회사는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 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 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본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 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위 제(5)항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 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단, 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또한,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 (7) 본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 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 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 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 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 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 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3. 분할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6 년 3 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6 년 3 월 13 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26 년 3월 30 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2026 년 4 월 9 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	2026 년 4 월 24 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일	2026 년 4 월 24 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일	2026 년 5 월 30 일

구 분	일 자
분할기일	2026년 5월 31일
분할보고총회 및 이사회 결의일	2026년 6월 1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6년 6월 5일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이며,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상법 제530조의 7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일의 2 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

#### 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영문명: IHQ, INC.
목적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제작·수입, 연예인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s://ihq.co.kr">https://ihq.co.kr</a>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 상호,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함.

(3) 자본감소의 방법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함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①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 ② 분할계획서의 승인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 계약관계로서 그 귀속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해당 채권, 채무, 계약관계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거나, (나) 해당 채권, 채무, 계약의 상대방과 그 귀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결정 혹은 합의에 따라 귀속을 결정한다.
- ③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과목	분할전 재무상태표	분할후 재무상태표	
		분할회사(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1. 유동자산	50,130	50,073	57
(1)당좌자산	50,130	50,073	57
2.비유동자산	84,195	84,082	666
(1)투자자산	13,943	13,443	500
(2)중속기업투자주식	38,718	39,270	-
(3)유형자산	25,589	25,589	-
(4)무형자산	5,681	5,531	150
(5)기타비유동자산	264	248	16
<b>자산총계</b>	<b>134,325</b>	<b>134,155</b>	<b>722</b>
부채			
1.유동부채	35,544	35,375	169
2.비유동부채	74	74	-
<b>부채총계</b>	<b>35,618</b>	<b>35,448</b>	<b>169</b>
자본			
1.자본금	3,542	3,542	500
2.자본잉여금	125,969	125,969	53
3.자본조정	(4,856)	(4,856)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09	1,709	-
5.이익잉여금	(27,657)	(27,657)	-
<b>자본총계</b>	<b>98,707</b>	<b>98,707</b>	<b>553</b>
<b>부채와자본총계</b>	<b>134,325</b>	<b>134,155</b>	<b>722</b>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분할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
	영문명: i-show media
목적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사업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1 주의 금액)	액면주식 (1 주의 금액 5,000 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 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1 주의 금액)	액면주식 (1 주의 금액 5,000 원)

(4)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함

(5) 분할회사의 주주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

구분	내용
자본금	500,000,000 원
준비금	-

주 1) 상기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7)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 ①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 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계획서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아울러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의 경우, 【별첨 1】 분할재무상태 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분할신설회사 귀속대상인 사업 또는 자산의 매각에 따른 자산 형태의 변경 포함)을 분할재무상태표에서 가감한다.

- ③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 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④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부동산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그 이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일체의 인허가 사항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 2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 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6년 5월 3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대표이사/ 사내이사	전호건	750304-	(현)IHQ 경영지원본부장

주1) 상기 이사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이사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따르되,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분할 등기일)로부터 개시됨.

②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위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 3】과 같다.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2)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해당 없음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 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또는 계약 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

-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비상장법인의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기로 한다.

(5)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 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2026년 03월 13일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오 준

<별첨 목록>

【별첨 1】분할재무상태표(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원)

계정과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b>I. 유동자산</b>	<b>50,129,645,343</b>	<b>50,073,098,423</b>	<b>56,546,920</b>
현금및현금성자산	63,088,905	63,088,905	-
매출채권	3,111,775,383	3,060,188,463	51,586,920
기타금융자산(유동)	44,566,440,992	44,562,480,992	3,96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51,062,915	851,062,915	-
기타유동자산	1,479,710,405	1,478,710,405	1,000,000
당기법인세자산	57,566,743	57,566,743	-
<b>II. 비유동자산</b>	<b>84,195,261,266</b>	<b>84,082,358,186</b>	<b>665,659,710</b>
기타금융자산(비유동)	974,620,439	474,620,439	5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8,198,999,427	8,198,999,4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2,913,000,000	2,913,000,000	-
종속기업투자	38,717,674,714	39,270,431,344	-
투자부동산	1,756,848,967	1,756,848,967	-
유형자산	25,589,238,333	25,589,238,333	-
무형자산	5,681,066,832	5,531,307,122	149,759,710
기타비유동자산	263,812,554	247,912,554	15,900,000
기타투자자산	100,000,000	100,000,000	-
<b>자산총계</b>	<b>134,324,906,609</b>	<b>134,155,456,609</b>	<b>722,206,630</b>
<b>I. 유동부채</b>	<b>35,544,093,540</b>	<b>35,374,643,540</b>	<b>169,450,000</b>
매입채무	2,667,119,122	2,504,869,122	162,250,000
단기차입금	14,510,000,000	14,510,000,000	-
기타금융부채(유동)	6,270,616,859	6,270,616,859	-
기타유동부채	4,312,257,559	4,305,057,559	7,200,000
기타충당부채(유동)	7,784,100,000	7,784,100,000	-
<b>II. 비유동부채</b>	<b>73,608,704</b>	<b>73,608,704</b>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21,915,443	21,915,443	-
순확정급여부채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채무	51,693,261	51,693,261	-
<b>부채총계</b>	<b>35,617,702,244</b>	<b>35,448,252,244</b>	<b>169,450,000</b>
<b>I. 자본금</b>	<b>3,541,865,000</b>	<b>3,541,865,000</b>	<b>500,000,000</b>
<b>II. 자본잉여금</b>	<b>125,969,435,148</b>	<b>125,969,435,148</b>	<b>52,756,630</b>
<b>IV. 자본조정</b>	<b>(4,855,827,030)</b>	<b>(4,855,827,030)</b>	-
<b>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b>1,708,770,000</b>	<b>1,708,770,000</b>	-
<b>VI. 이익잉여금</b>	<b>(27,657,038,753)</b>	<b>(27,657,038,753)</b>	-
<b>자본총계</b>	<b>98,707,204,365</b>	<b>98,707,204,365</b>	<b>552,756,630</b>
<b>부채와자본총계</b>	<b>134,324,906,609</b>	<b>134,155,456,609</b>	<b>722,206,630</b>

【별첨 2】승계대상 재산 목록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내역	금액
당좌자산	매출채권	프로그램 사용료 (25년 11월~12월)	
	선급금	뮤직앤조이 무대 설치/해체 비용(1회~9회)	
	미수금	뮤직앤조이 공동제작비 (13회~24회)	
계			56,546,920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장기선급금	[이모네집]_EP_1_구매_24년 12월 외 5건	
계			515,900,000
무형자산	방송프로그램 (구매물)	(ALL)_[사랑의 콜센타]	
		[뮤직인더트립]_EP_1~3	
		[필드마블]_EP_1~8	
		[영웅]_EP_1~3	
		[사랑의 불시착]_EP_1~3	
		[사랑의 콜센타]_EP_28~67	
		[뮤직인더트립]_EP_4~10	
		[퀵빌드 미라클 하우스]_EP_1~6	
		[제철 요리해 주는 옆집누나3]_EP_5~12	
		[K-외국인 썰전, 나는 고인물이다]_EP_1~4	
		[휴먼크로니클]_EP_1~6	
		[태군노래자랑3]_EP_1~12	
		[당골집]_EP_1~15	
		[엄홍길의 산악버스]_EP_1~12	
[김석훈의 어! 여기봐라 파트1]_EP_1~13			
[제2의 결혼전쟁 살까 말까]_EP_1~12			
계			149,759,710
<b>자 산 총 계</b>			<b>722,206,630</b>
유동부채	매입채무	송출대행료 (10월~12월)	
	선수금	뮤직앤조이 공동제작비 (1회~24회)	
<b>부 채 총 계</b>			<b>169,450,000</b>

# 定 款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  
(i-show media)

## 第1章 總 則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라 한다. 영문으로는 "i-show media"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
1. 방송업
1. 케이블티브이 프로그램 공급사업
1.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사업
1. 방송프로그램 유통 및 수출입업
1. 종합유선방송사업 광고 및 문화선전사업
1. 종합유통업
1. 통신판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광고제작 및 대행업
1. 인쇄물, 전자, 통신매체들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부동산 관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第2章 株 式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7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일반공모증자등)**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의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이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작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여하는 제10조의 4의

⑧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여하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와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第3章 社 債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안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황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황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여하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第4章 株主總會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일때에는 회일의 10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를 갈음 할 수 있다.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2개이상 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명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第5章 이사,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이상으로 한다. 회사는 필요시 약간명의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및 해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이상,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경우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의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임등)**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第6章 감사

**제42조 (감사)**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자본의총액이 10억 미만일때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3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4조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한 결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결정한다.

②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第7章 계산

**제48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재무재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복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및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1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현금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중간배당)** ①본 회사는 영업 년도 중 1회에 한하여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이익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제1항의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을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위와 같이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6. 03. 13.

### 주식회사 아이쇼미디어

발기인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대표이사 오 준 (인)

## 위임장

본인은 2026년 04월 24일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의 제65기 임시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위임범위	의결권 위임

- 다음 -

1. 소유주식수 : \_\_\_\_\_ 주
2. 의결권 있는 주식수 : \_\_\_\_\_ 주
3. 위임할 주식수 : \_\_\_\_\_ 주
4.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5.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 각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백지위임장은 해당 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주 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위임일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